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서

2022. 9.

노 원 구
노원구서비스공단



제 1 장 총 칙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에 의거하여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평가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이사장간의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공단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구청장과 이사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계약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②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2년 9월 23일부터 2025년 9월 22일 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임기가 연장 혹은 연임되는 경우, 상호 간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본 계약의 효력은 연장된 임기까지 지속된다.

제4조(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운영조례”라 한다),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운영조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지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공정한 직무수행) ① 이사장은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복으로든지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임기 중 겸직제한 등) ① 이사장은 공단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지득한 공단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제7조(경영목표) ①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시달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이하“경영평가”라 한다) 지표를 준용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경영실적 보고) ① 이사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당해연도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청장과 협의하여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미비한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① 이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구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경영목표 평가기준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③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10조(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① 이사장의 경영성과 결과(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행실적평가”를 말한다.)는 기본연봉 및 평가급에 반영한다.

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종료 후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③ 이사장은 임기 종료 후 연임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④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2인 이상의 이사장이 재임한 경우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봉 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이사장에만 적용한다.

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1조(보수체계) 이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평가급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본연봉) ① 이사장의 임기 중 기본연봉액은 별표1과 같으며 매월 12분의 1씩 공단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전항의 기본연봉에는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부가급여는 공단 보수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장의 기본연봉을 인상 또는 삭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임기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여 정산한다.

⑤ 이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 일이 속하는 월은 공단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평가급) ① 이사장의 평가급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정하는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② 평가급 지급 시기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③ 이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평가급은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평가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의(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규정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평가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수 지급 후의 조정) ① 이사장에게 평가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수 지급 시에 이를 조정한다.

② 이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퇴임한 이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장이 그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이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②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복리후생 등) ① 공단은 이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② 이사장의 휴가,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기 타

제17조(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 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2. 정부정책, 노원구정책, 경영환경 및 여건변화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3. 경영성과 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도·조언, 권고한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이사장 상호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청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19조(권리의 귀속)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에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20조(세금)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징수 한다.

제21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지방공기업법과 노원구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노원구 서비스공단 정관에 따라 노원구청장과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은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경영계약을 체결함.

2022년 9월 일

노 원 구 청 장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오 승 록 (인)



김 치 환 (인)



별 표 1. 기본연봉

2. 경영목표

3. 경영목표 평가기준

4.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등급 기준

5. 연임 및 해임 기준

6. 기본연봉 조정 기준

7. 평가급 지급 기준



[별표1] 기본연봉

☐ 기본연봉 : 금 69,019,000원(금육천구백일만구천원)

기본연봉	69,019,000원
평가급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
부가급여	공단 보수규정 준용

[별표2] 경영목표

연번	경영목표	세부추진사항	배점	비고
합 계			105	
1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제공	민원발생 증감률	5	
		지역상생발전	5	경영평가 결과
		재난, 안전관리	5	경영평가 결과
2	고객만족증진	민원 처리기한 준수	5	
		고객만족도	10	경영평가 결과
3	경영수지 개선	수입목표 달성	10	경영평가 결과
		노동생산성	5	경영평가 결과
		대행사업비 절감률	5	경영평가 결과
4	사회적 가치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5	경영평가 결과
		소통 및 참여	5	경영평가 결과
5	사업운영의 활성화	수탁시설 이용자수 증감	10	
		편의시설 및 부가사업 확대 실적	5	
6	조직역량 강화	경영층의 리더십	5	경영평가 결과
		직원 내부만족도	10	
7	정책 준수	전략경영	5	경영평가 결과
		감사 지적사항 개선	5	
8	가점	정부 표창 수상	3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	2	



[별표3] 경영목표 평가기준

☐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15점)

1. 민원발생 증감률(5점): 전년대비 민원발생 증감률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고
증감률(%)	△5% 이하	△5%초과~ △2%이하	△2%초과 ~0%이하	0%초과~ 5%이하	5%초과	10%초과시 0점

※ 공단 차원의 불가항력적 민원, 음해성 민원 제외

2. 지역상생발전(5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적용

- 해당연도 "지역상생발전" 평가결과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 비율환산 평정

3. 재난·안전관리(5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적용

- 해당연도 "재난·안전관리" 평가결과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 비율환산 평정

☐ 고객만족 증진(15점)

1. 민원 처리기한 준수(5점)

- 공단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기한 내(3일) 처리 여부 평가

- 평가방법: 5점 × (기한 내 처리건수 / 전체 접수 건수)

2. 고객만족 향상도(10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적용

- 해당연도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 비율환산 평정

☐ 경영수지 개선(20점) ※ 코로나19로 인한 평가 한계 시 경영평가 코로나19 대체지표 항목 반영

1. 수입목표 달성률(10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적용

- 해당연도 "사업수입" 평가결과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 비율환산 평정

2. 노동생산성(5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적용

- 해당연도 "노동생산성" 평가결과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 비율환산 평정

3. 대행사업비 절감률(5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적용

- 해당연도 "대행사업비 절감률" 평가결과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 비율환산 평정



☐ 사회적 가치 향상(10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5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적용
 - 해당연도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평가결과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 비율환산 평정
2. 소통 및 참여(5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적용
 - 해당연도 "소통 및 참여" 평가결과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 비율환산 평정

☐ 사업 운영의 활성화(15점)

1. 수탁시설 이용자수 증감(10점)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비고
증감률(%)	5%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1%이하	-

※ 평가 = {(해당연도 이용자수 - 최근 3년 평균이용자수) / 최근 3년 평균이용자수} × 100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평가 한계 시 경영평가 코로나19 대체지표 항목 반영

2. 편의시설 또는 부가서비스 확대 실적(5점)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고
건수	6건이상	4~5건	2~3건	1건	0건	-

※ 편의시설 또는 부가서비스를 확대 실시 또는 개선한 건수

☐ 조직역량 강화(15점)

1. 경영층의 리더십(5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적용
 - 해당연도 "경영층의 리더십" 평가결과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 비율환산 평정
2. 직원 내부만족도(10점)
 - 공단에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당연도 직원 만족도 점수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비고
평가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50점 미만 0점

☐ 정책준수(10점)

1. 전략경영(5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적용

- 해당연도 "소통 및 참여" 평가결과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 비율환산 평정

2. (외부)감사 지적사항 개선(5점)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고
비율	100%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0점

※ 평가 = (이행건수 / 총 지적건수) × 100

☐ 가점(5점)

1. 정부 표창 수상(3점)

- 기관 표창의 경우: 건당 1점, 개인 표창의 경우: 건당 0.5점

2.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2점)

- 정부기관(부처), 정부산하 유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평정

※ 인증 1건당 1점, 최대 2건까지 인정

[별표4]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등급 기준

평가등급	이행실적평가 등급				
	95점 이상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등 급	S	A	B	C	F

[별표5] 연임 및 해임 기준

☐ 이사장 연임 판단 기준

1. 경영평가 또는 이행실적평가에서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2. 경영평가 결과 매년 평가등급이 상향된 경우로서, 임기 중 최종 경영평가에서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3. 임기 중 최종 경영평가 기준으로 2년 연속 '나'등급 이상을 받고, 최종 이행실적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자체 심사결과 경영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 이사장 임기 중 해임 기준

1. 경영평가 및 이행실적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2. 임기 중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라' 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3. 경영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히 악화된 경영상태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만, 이사장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

[별표6] 기본연봉 조정 기준

1.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상 또는 삭감한다.

(단위: %)

평가등급		이행실적평가 결과				
		S	A	B	C	F
경영평가 결과	가	10	8	6	4	2
	나	5	4	3	0	0
	다	3	2	1	0	0
	라	0	0	0	0	0
	마	△5	△6	△7	△8	△10

2. 임기 중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 ①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5% 범위 내에서 추가 인상 할 수 있다.
- ② 이행실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고(또는 최저)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5% 범위 내에서 추가 인상(또는 삭감) 할 수 있다.

3. ①,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정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별표7] 평가급 지급 기준

1. 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경영평가 등 급	평가급 지급률	비고
가	400 ~ 301%	-
나	300 ~ 201%	-
다	200 ~ 100%	-
라	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익년도 연봉 삭감 (5~10%)

2. 임기 중 경영성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 ①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5%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 ② 이행실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5%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3.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정부의 지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른다.